

## 2024년 제2회(재공고)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4년 제2회(재공고) 전라남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. 3. 26.
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임용분야	임용직급	채용 인원	근무기간	담당 업무
감사관실	감사행정 수행·지원	지방행정사무관 (일반임기제)	1명	임용일 ~ 2년 (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)	•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시 전문성 확보 • 사전 컨설팅 감사 및 감사처분요구 재심의 시 행정의 합법성 확보
동물위생 시험소	도축검사	지방수의주사보 (일반임기제)	3명	임용일 ~ 2년 (기간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)	•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의 도살 · 처리 및 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필요

※ 일반임기제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연장 검토(총 5년 범위)

※ 시간선택제 임용기간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1년 추가 연장 가능

※ 직제·기구가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

### 2. 응시자격

#### 가. 공통사항(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

## 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

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○ 주소지·성별·연령 : 제한 없음     \*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

○ 국적 : 대한민국(외국인이 아닌자)

나.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임용분야	자격 요건
감사행정	• 「변호사법」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(우대사항) ·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(사법연수원 연수 기간 제외) ※ 경력사항 적용 기준일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적용하며, 전임 외의 근무경력은 "주근무시간/주40시간"의 비율 적용
수행·지원 (일반임기제, 5급상당)	

임용분야	자격요건
<b>도축검사</b> (일반임기제, 7급상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수의사법」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</li> </ul> <p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f; padding: 5px;"><b>(우대사항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ul>

※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학위,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기준으로 판단하며, **'경력'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**(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)

※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**우대요건**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### 3. 근거법령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)
- 라. 「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### 4. 보수수준

- 가.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

※ 시간선택제는 임기제공무원의 해당직급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(주당 35시간)하여 책정

## 나. 연봉한계액(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관련)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일반임기제 5급(상당)	-	65,346
일반임기제 7급(상당)	66,396	47,157

※ 연봉 외 급여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. 시험방법 및 일정

### 가. 시험방법

#### ○ 1차 시험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< 서류전형 심사기준 >

평정요소	채점기준
발전가능성	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, 성장가능성 등 평가
업무적합성	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
우대사항	장기근무 경험자, 관련학위 및 자격증 보유자 등 우대 (분야별 우대요건 참고)

#### ○ 2차 시험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 - ▶ (평정요소)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 - ▶ (평가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 · 응답

-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불합격기준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할 때

## 나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합격자 발표
'24. 3. 26.(화) ~ 4. 5.(금)	'24. 4. 2.(화) ~ 4. 5.(금)	서류전형	'24. 4. 17.(수)	'24. 4. 19.(금)
		면접시험	'24. 5. 3.(금)	'24. 5. 20.(월)

※ 합격자 발표: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(<http://namdo.jeonnam.go.kr/sihum/>)에 게시

※ 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## 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: 별지1~10호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수처: 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(☎ 061-286-3372)

다.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   \* 등기우편 접수 권장

### ○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
- 우)58564,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(전라남도청) 총무과 인재채용팀
- 봉투 겉표지에 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종” 글자 표기

○ 우편 접수자의 경우,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,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○ 우편접수 시, **응시수수료(우체국 통상환증서)**는 제출서류와 동봉

※ 응시원서는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. 서류합격 시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.

## 7. 응시자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② 응시원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  - 증명사진(최근 6개월 이내 / 3.5cm×4.5cm) 1매
  - 응시수수료 : 1만원(5급 이상), 7천원(6~7급, 지도사, 연구사), 5천원(8~9급)
    - 1만원 (5급, 시간선택제‘가’급)    · 7천원 (6급, 7급, 연구사, 시간선택제‘나’,‘다’급)
    - 5천원 (8급, 9급, 시간선택제‘라’,‘마’급)
- ※ 응시수수료는 **전라남도 수입증지**(전남도청 1층 농협에서 판매), 우편 접수시는 **우편통상환**(우체국에서 판매)으로 대체    ※ **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**
- ③ 이력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  -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
  -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
- ④ 자기소개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- ⑤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1부
-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 1부
-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 1부
- ⑧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포함)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제8호 서식)
- ⑨ 최종학교 학위증서(또는 졸업증명서) 1부    ※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 공증 첨부
  - 박사학위의 경우, 석·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  - 석사학위의 경우,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
- ⑩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 -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, 연락처 기재
  - 증명서에는 **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**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, 민간경력의 경우,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사업자등록증 사본 등)를 함께 제출 (**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**)
  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 전형 시 **불이익**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

\* 경력(재직)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 
상이할 경우 “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 제9호 서식)” 추가 제출

-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(週)단위 근무시간(예시 : 주 20시간)을  
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(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 
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)

**⑪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**

**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필수)**

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 
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
**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**

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
사실증명서’ 추가 제출

**⑫ 자격(면허)증 등 1부(해당자에 한함)**

**⑬ 학위 · 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(별지 제10호 서식) 1부(해당자에 한함)**

**《응시자 유의사항》**

**①**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 
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
**②**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**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(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)을 인정하며,**  
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 
기재된 것에 한함)내의 서류여야 함

**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**

**⑤**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 
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8. 기타 사항

- 가.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 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 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.
- 라.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에 기재된 내용(학력, 경력 등)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

- 바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 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
※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치음

- 사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아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3조의3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

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

- 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차.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.
- 카.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.
- 타.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파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: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(☎ 061-286-3372)

▶ 담당직무 관련 문의

임 용 분 야	담 당 부 서	연 락 처
감사행정수행·지원	감사관실	061-286-2243
도축검사	동물위생시험소	061-286-6110

## 참 고

## 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 직급	선발예정인원
감사행정 수행·지원	지방행정사무관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전라남도	감사관실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</li> <li>○ 사전 컨설팅 감사 법령 해석 등</li> <li>○ 감사 처분 요구 재심의 및 재조사</li> <li>○ 기타 감사 업무 관련 법률 검토 등</li> </ul>
------	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공통 역량)</b>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, 공직문화 감수성(적응력, 소속감)</li> <li>○ <b>(직급별 역량)</b> 전문성, 성실성, 협력성(팀워크지향), 적극성, 상황인식 /판단력, 기획력, 의사소통능력 · 조정능력</li> <li>○ <b>(직렬별 역량)</b>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추진력</li> </ul>
------	-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전 컨설팅 감사 법령 해석 등 법률적 전문지식</li> <li>○ 신속·정확한 고충민원 처리 수행 지식</li> <li>○ 보고서·계획서 등 문서작성에 요구되는 지식</li> </ul>
------	---

응 시 자 격 요 건	관련분야 : 감사행정	
	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.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</li> </ul>
우대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(사법연수원 연수 기간 제외)</li> </ul>	

## 참 고

## 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 직급	선발예정인원
도축검사	지방수의7급(일반임기제)	3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전라남도	동물위생시험소

주요업무	○ 도축검사 ·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· 도축장 영업자·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· 지도 · 검사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 처리 · 축산물 압류 · 폐기 · 회수 ·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 · 운영 여부 확인 · 가축·축산물 위생관리 관련 업무

필요역량	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, 공직문화 감수성(적응력, 소속감)
	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 · 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 · 조정능력
	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
필요지식	○ 수의미생물학, 수의보건학, 수의전염병학 전공 지식 ○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○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○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

응 시 자 격 요 건	관련분야 : 도축검사	
	자격	○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· 「수의사법」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
우대요건	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	